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10. 20 선고 2017가단1321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9. 29.

판결 선고 2017. 10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에게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신성철

별지